

4. 투자 우대 조치

제조업 - 인센티브 및 적용기준

체코정부는 신규투자자 및 기존투자자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투자 인센티브 및 사업지원을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제조시설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국가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2008년 12월말까지 545 업체가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다.

국가의 인센티브 제도

체코정부는 1998년 4월 처음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승인하였다. 당초에 인센티브 제도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입안되었다. 원래의 국가 인센티브 제도를 체계화, 단순화, 확대하여 **“투자 인센티브 법”**(Act No. 72/2000 Coll)이 2000.5.1일 발효되었으며, 2004년 5월 개정되었다. 이 법은 유럽위원회와 협의되었으며 공적 보조금에 대한 EU 제도를 따른다.

투자 인센티브에 관해 법률에 열거된 인센티브

세제상 우대조치	신설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법인세 면제 기존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10년간 부분적 법인세 면제
고용창출보조금	신규 고용에 대해서 자금 지원
훈련, 재훈련 보조금	신규 고용자에 대한 훈련 및 재훈련에 대해서 자금지원
입지 우대조치	유리한 가격으로 공유지 매각

우대조치는 일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투자자의 계획된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세제상 우대조치

세제상 인센티브는 2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신설기업(법인)이 투자계획에 따라 설립되었다면 신설기업은 10년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투자자가 기존의 체코 기업(법인)의 사업확장이나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라면 10년까지 부분적인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 면제혜택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적보조의 최고금액에 이르면 종료된다. - 아래의 우대조치에 대한 EU 규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참조)

고용창출 보조금 & 직업훈련 보조금(훈련 & 재훈련)

고용창출 보조금의 규모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결정되며, 전국평균실업률보다 낮은 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급이 없으며, 전국 평균 실업률보다 50%이상 높은 실업률 지역의 경우 1인당 CZK50,000의 보조금을 받는다. 훈련 및 재훈련 보조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연수·재연수 비용총액의 최고 35%까지 보조를 받는다.

입지 우대조치

이 우대조치는 적절한 부지가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국가적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부지는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정되어야 한다. 인센티브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업자에 앞 부지의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보조금의 형태나 정부소유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이러한 우대조치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92개의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조업에 대한 적용기준

- 제조업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라인의 최소 50%이상이 정부가 승인한 하이테크 기계로 명시되어 있는 기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제품을 확장하거나 설비를 현대화하는 투자이어야 한다.
- 3년이내 최소 투자금액은 CZK 200백만(약 USD8.5백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최소 투자금액은 실업률에 따라 CZK 150백만 또는 CZK 100백만으로 낮게 적용할 수 있다.
- 상기의 투자 최소금액의 50%는 투자자의 자기자본이어야 한다.
- 총 투자금액의 최소 40%는 기계에 투자해야 한다.
- 예정된 생산제품은 모든 체코의 환경보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투자 우대조치 - EU 규제에의 적합성

체코공화국에서 적용되는 투자 우대조치 규제가 EU 국가보조법에 적합한지 여부는 EU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각각의 투자 우대조치에 대한 신청은 산업통상부의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는 각 프로젝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의 총액을 결정한다. 각 프로젝트별로 수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조금은 실제투자액(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건물, 기계 및 설비, 무형자산에 대한 제한적인 지출)의 비율로 계산되며, 일단 프로젝트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에 도달하게 되면 법인세 면제는 종료되며,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EU 규제에 따라 체코공화국에서 지역별로 적용하는 정보보조금의 최고비율에 대해서는 붙임의 지도를 참조하실 것.

체코투자청은 상기 인센티브에 대한 신청을 받는 유일한 기관이다.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내용은 투자청의 인센티브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받거나 프린트 된 또는 전자적인 형태의 '투자 인센티브 매뉴얼'을 체코투자청에서 받을 수 있다.

MAXIMUM PERMISSIBLE STATE AID INTENSITY (2007-2013)



Region	State aid intensity	Filler
Prague	0%	
South-west	36% (2007-10) 30% (2011-13)	
Other regions	40%	

The permissible state aid intensity for investment projects in which deductible costs do not exceed EUR 50 million is increased by 20% in the case of small enterprises and by 10% in the case of medium-sized enterprises. The permissible state aid intensity for investment projects in which deductible costs exceed EUR 50 million is stipulated by the Regional Support Guidelines 2007-2013.